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내 무 위 원 회
1995. 3. 24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2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5. 3. 24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'95. 6월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기획단의 설치운영과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, 그리고 차량신규구입 및 감축등
-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정원 증원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▷ 정원 : 26명 증원

○ 본청 : 1명

· 지방자치기획단 설치운영 5명 · 시군통합추진기획단 △1명

· 고급간부양성과정교육대상자 △1명 · 차량감축에 따른 정원 △2명

○ 직속기관 —— 24명

· 신규소방장비구입 22명 ·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

·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차량구입 1명

○ 사업소 —— 1명

· 도유립사업소 차량구입 1명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
본청 892명을 893명으로 1명증원하고, 직속기관의 840명을 864명으로
24명을 증원하며, 사업소의 369명으로 되어있는 정원을 370으로 1명을
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· 본청의 정원에 있어서 1명이 증원되었는바 이는 지방자치기획단 설치
운영에 필요한 5명의 증원과 시군통합추진기획단 1명, 고급간부양성

과정 교육대상자 1명, 차량감축에 따라 2명 등을 각각 감원 조정한
것이며

- 직속기관의 정원에 있어서는 24명이 증원되었는데
이는 신규소방장비구입에 따라 22명이 증원되었고, 고급간부양성과정
교육대상자 1명과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차량구입에 따른 1명의
증원이 필요하므로써 증원하게 되었으며
- 사업소에 있어서의 1명 증원사유 또한 도유림사업소의 차량을 구입함
으로써 그에따른 소요인력을 충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규조분 대비표